

#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0
----------	-----

제출년월일 : 2002년 2월 19일

제출자 : 평창군수

## 1. 제안이유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과 분장사무의 조정과 야생조수보호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부서간 분장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가. 분장사무조정

- 지역경제 및 상공에 관련된 업무 : 도시경제과 → 기획실
- 가스시설공사 및 관련업무 : 도시경제과 → 기획실
- 야생조수 보호 및 유해조수 구제 업무 : 임업경영과 → 환경복지과

### 나. 업무이관에 따른 기구명칭 변경

- 도시경제과 ⇒ 도시과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관계부처승인 : 산정67140-329호(2001.3.15)참조

라. 입법예고 : 해당없음

마.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바. 조례·규칙심의회 : 제3회 평창군조례·규칙심의회('02.2.14)원안의결

##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도시경제과"를 "도시과"로 한다.

제3조제2항제9호"도시경제과"를 "도시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에 "사"목 및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지역경제 및 상공에 관련된 업무  
아. 가스시설 공사 및 관련업무

제3조제2항제6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야생조수보호 및 유해조수 구제

제3조제2항제7호의 "다"목을 삭제하고 "라"목을 "다"목으로 하며  
동조동항제9호의 "마"목과 "바"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실·과의 설치) ①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종합민원실·자치행정과·재무과·문화관광과·환경복지과·임업경영과·건설과·도시경제과를 둔다.</p> <p>② (생략)</p> <p>1. 기획실 가. (생략) 나. (생략) 다. (생략) 라. (생략) 마. (생략) 바. (생략) &lt;신설&gt; &lt;신설&gt;</p> <p>2~5 (생략)</p> <p>6. 환경복지과 가. (생략) 나. (생략) 다. (생략) 라. (생략) &lt;산설&gt;</p> <p>7. 임업경영과 가. (생략) 나. (생략) 다. 야생조수보호 및 유해조수 구제 라. 산림행정 및 임업경영에 관련된 업무</p> <p>9. 도시경제과 가. (생략) 나. (생략) 다. (생략) 라. (생략) 마. 지역경제 및 상공에 관련된 업무 바. 가스시설 공사 및 관련업무</p>	<p>제3조(실·과의 설치) ①----- ----- -----도시과 -----</p> <p>② (현행과 같음)</p> <p>1. 기획실 가. (생략) 나. (생략) 다. (생략) 라. (생략) 마. (생략) 바. (생략) 사. 지역경제 및 상공에 관련된 업무 아. 가스시설 공사 및 관련업무</p> <p>2~5 (현행과 같음)</p> <p>6. 환경복지과 가. (생략) 나. (생략) 다. (생략) 라. (생략) 마. 야생조수보호 및 유해조수 구제</p> <p>7. 임업경영과 가. (생략) 나. (생략) 다. 산림행정 및 임업경영에 관련된 업무</p> <p>9. 도시과 가. (생략) 나. (생략) 다. (생략) 라. (생략) 마. &lt;삭제&gt; 바. &lt;삭제&gt;</p>

나 하나의 작은 관심이 산불을 막을 수 있다.



(우)200-700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번지 / 전화 (033) 249-3112 FAX) 249-4043  
 산림정책과장 김은기 보호담당 성길용 담당자 김홍섭 E-mail khs1234@provin.kangwon.kr

문서번호	산정 67140-329	선람	과장	Grubbs	지	
시행일자	2001.03.15 (3)	접	일자	2001. 3. 15	시	
공개여부	공개	수	시간	21.	결재	김은기 이주하
수신	수신처 참조		번호	44	공람	
참조	총무, 산림관련과장	처리과				
		담당자		이주하		
		심사자			심사일	

제 목 야생조수보호관리 업무이관 철저

1. 산림청에서 추진하던 야생조수보호관리 업무가 정부조직법 개정공포(법률 제5982호, '99.5.24)로 환경부소관 업무로 변경되었으나 우리도에서는 그동안 야생조수 보호업무를 농정산림국(산림정책과)에서 계속 추진하여 오던중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 조례 제2836호, 2001.3.3)등을 개정하고 실국간 사무분장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바 있습니다.

2. 이에따라, 본도에서는 2001.3.3일 자로 야생조수 관련업무 일체가 농정산림국 산림정책과에서 환경복지국 환경정책과로 이관되었음을 알려드리니,

3. 시·군에서도 산림부서에서 관장하던 야생조수 관련업무를 환경부서를 이관하는등 일련의 후속조치를 하시어, 중앙부처 및 도와의 업무 일관성 유지 등으로 원활한 업무수행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도보 제3825호(2001.3.3) 참조.

강 원 도 지



수신처 : 더(01-07) 더(08-18)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개정이유

- 재난·재해 등 유사한 기능을 일원화하고, 공원·조수보호 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실국간 분장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해양수산물출장소의 명칭을 환동해안 시대에 걸맞게 변경하고, 남녀 차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 통신사무를 기획관리실로, 특정지역 개발 사무를 자치행정국으로, 공원관리 사무를 환경복지국으로, 재난 및 통합상황실 운영 관련 사무를 건설도시국으로 각각 이관함(제6조·제8조 및 제12조)
- 강원도해양수산물출장소의 명칭을 강원도환동해출장소로 변경함(제31조)
- 여성회관·여성수련원의 설치 및 분장사무중 남녀 차별적 규정을 각각 정비함(제48조 및 제49조)

규 칙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1년 3월 3일

강 원 도 지 사 김 진 선 ㉠

강원도규칙 제 2565 호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중 “도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제8조제4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3. 통신시설 종합관리 및 운영

제9조제1항중 “총무과·자치행정과·세무회계과·민방위재난관리과”를 “총무과·자치행정과·지역지원과·세무회계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총무과장·자치행정과장·세무회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을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하며, 동조 제3항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동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무원 복리후생 및 직장내 성차별·성희롱에 관한 사항

- 9. 농어촌 복지시설 확충.
- 10. 취약지 대책 및 군부대주변 환경정비 사업
- ⑥세무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세무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 2. 지방세 제도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3. 세외수입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4. 기부금품 모집통제 및 도 금고의 감독
  - 5. 지방채 발행 및 기재자금의 차입과 상환
  - 6. 부동산 등급설정, 과표조정 및 수정에 관한 사항
  - 7. 시·군세 부과·징수 지도감독
  - 8. 지방세무의 감찰, 세무법칙 사건의 조사처리
  - 9.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
  - 10. 국·도비 지출 및 결산 전반에 관한 사항
  - 11. 회계직공무원의 직인관리 및 제정보증
  - 12.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 13. 독품 징수책정 및 배정승인 등 총괄관리
  - 14. 공사·용역·물품의 계약관리 및 전반에 관한 사항
  - 15. 국·공유 재산관리 종합계획 수립조정
  - 16. 국·공유 재산의 처분·대부·사용허가·용도폐지·등기에 관한 사항
  - 17. 시·군유재산 관리 업무의 지도감독
- 제10조제2항중 “맑은물보전과장은 지방환경서기관·지방보전서기관”을 “맑은물보전과장은 지방환경서기관”으로 하고, 동조 제3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조동항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에 제17호 내지 제2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4항중 제6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동항에 제17호 내지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6. 대기 및 소음진동 배출시설 허가·지도단속
  - 17. 자동차 배기가스 및 소음 지도단속
  - 18. 연료사용 규제, 악취, 비산먼지 등 대기보전 사무
  - 19.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 관리·배출부과금 및 과징금 부과·징수
  - 20. 양생조수 보호 및 증식
  - 21. 국립공원에 관한 협의
  - 22. 도·군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수립
  - 23. 공원사업 시행 허가 및 공원관리특별회계 운영
  - 24. 공원자원 및 시설의 보호관리
  - 25. 공원의 시설설계 및 집행
  - 26. 그 밖의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담당관 실·과	담당	분 장 사 무
	지역 개발	1. 접경지역 및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 2. 읍면 복지회관 등 농어촌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3.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사업 4. 국토환경 가꾸기 및 도로·철로변 정비 5.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및 새마을 시설물 관리 6. 소도읍 개발 및 취약지 대책 7.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 사업

□ 환경복지국

담당관 실·과	담당	분 장 사 무
환경 정책 과	환경정책	1. 국 소관 및 환경정책의 총괄기획·조정 2.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 3. 환경보전전문위원회 운영 4. 환경정책 평가·분석 및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5. 환경기본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 6. 환경정보체계(GIS) 구축 및 운영 7. 환경신문고 운영 및 환경관련 교육훈련 8.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관련 사항 9. 환경부등 관련 실국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10. 과내 일반사무 업무
	환경보전	1. 환경영향평가 계획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협의내용 관리 3. 폐광지역 환경조사 및 보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 피해분쟁조정 및 위원회 운영 5. 환경보전에 관한 홍보의 총괄·조정 6. 환경관리인 등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운영조례에 관한 사항 8. 환경관련 민간단체 관리 9. 환경백서 발간 10. 대기 및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사후관리 11. 연료사용 규제 및 관리 12. 악취발생 사업장 관리 13.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진동 상시단속 14. 운행자 검사 대행자 지정 15.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16. 대기속정망 및 굴뚝자동측정망 설치 운영 17.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18. 기타 대기 및 소음관리에 관한 사항

담당관 실·과	담당	분 장 사 무
	생활환경	1. 생활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변경허가 3.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생활쓰레기 관리 및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5. 쓰레기 종량제 및 자원 재활용 6.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7. 사업장 폐기물 관리 8. 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사항 9. 청소장비 개선 및 보강지도 10. 감염성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11. 공병보증금제 관련 사항 12.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시설 지도관리 13. 자연정화·보호활동 및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자연환경	1. 자연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자연상징물 표식설치 및 상징물 지정·보전·활용 3.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 동·식물 보호관리 4. 야생조수 보호·증식, 조수보전구 지정 및 유해조수 구제 5. 사면보호조직 운영 6. 생태계 보전지역등의 지정관리 및 조사연구 7. 자연환경 명예지도원 위촉 및 운영 8. 자연휴식지 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 9.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 관리 및 이용료 징수 10. 자연환경보전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 11. 토양오염 관리 및 방지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12. 기타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공 원	1. 국립공원에 관한 사항 2. 도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승인 3. 군립공원 지정 승인 4. 공원사업 시행허가 및 개발사업 추진 5. 공원자원 및 시설재산 보호관리 6. 공원내 위법행위 단속 7. 기타 공원계획 및 공원개발에 관한 사항
맑은물 보전과	수질보전	1. 수질보전대책 총괄 조정 및 추진 2. 유해화학물질 및 유독물사업장 관리 3.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4.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5. 하천·호소 수질측정망 운영 6. 수질오염사고 방계대책 및 공공수역 수질오염 감시 7. 물관리 GIS 설치·운영 8. 오염 하천·호소 정화사업 9. 화장실분화 대책신 추진 10. 과내 일탕사무